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8, pp.1-36
<https://doi.org/10.29212/mh.2018..10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유엔사의 어제와 오늘

: 유엔군사령부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평화체제 이행시의 주요 문제

설인호*

1. 서 론
2. 유엔사의 성립 및 전개과정
3. 평화체제 이행의 주요 쟁점 및 역사적 분석의 함의
4. 결론 및 제언

1. 서 론

북한의 핵개발로 전운마저 감돌았던 한반도는 2018년 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여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이 점차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안전 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주로 대북제재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해제와 함께 한반도 정전상태의 종식, 북미관계 정상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관계 역시 새로운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전쟁이 종결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민족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놓인 도전 역시 만만치 않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동안 북한 억제와 한반도 평화 유지의 버팀목이 되어온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 이하 유엔사) 체제의 존속 여부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역시 북핵 위협 소멸과 더불어 속도가 붙을 것이며 지휘체계 문제 등과 관련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과 연관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이를 격퇴하기 위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의 결과로, 이때 조직된 16개국 군대의 지휘를 위한 사령부로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결성된 국제연합(UN)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이행 조치를 예비하고 있었으나 종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의 여파로 원래의 구상대로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은 정치협상의 조속한 개최와 평화협정 체결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냉전의 대결구도 하에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계속 심화되어만 갔다. 이와 함께 자유진영과 공산권, 제3세계 국가들의 유엔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유엔사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전개되어 갔다.

향후 정치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유엔사의 역할과 위상 및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미 양국 등 동북아 주요 국가

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국내정치에서도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상술한바 유엔군 사령부는 단순히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 원리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지난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전개과정 및 맥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여 국론의 분열과 함께 결과적으로 국익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기될 유엔사 관련 주요 쟁점들이 파생된 역사적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사사 학계의 역할과 기여가 긴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유엔사의 성립 및 이후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가 수립되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이양되는 과정과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수립되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냉전기 유엔사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 및 연합사 체제 수립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유엔사 무력화 시도와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제시될 유엔사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각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전략을 분석, 제시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유엔사 관련 문제의 본질을 제시하고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2. 유엔사의 성립 및 전개과정

가. 유엔군 사령부의 성립

유엔사는 한국전쟁 발발 후 통과된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의해 수립되었다.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직후 개최된 유엔 안보리는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는 결의안 82호를 통과시켰다. 본 결의안은 북한의 남침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안 이행을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동 결의안은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고슬라비아의 기권으로 9대 0으로 통과되었다.¹⁾

이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세가 지속되자 안보리는 6월 27일 북한이 적대행위 중지의 의도가 없다면 유엔회원국이 침략을 격퇴하고 한반도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83호를 통과시킨다. 동 결의안도 소련의 불참과 유고슬라비아 기권 등 7대 1로 통과되었다.²⁾

1)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1501], June 25, 1950,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ODS). 6월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82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무력 공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평화 파괴행위에 해당하며, 3.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4. 북한의 당국이 38선 이북 지역으로 즉시 퇴각할 것을 명함.

2)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1511], June 27, 1950,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ODS). 6월 27일 안보리 결의 83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공격은 평화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결정하고, 2.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며, 3. 북한이 즉시 38선 이북 지역으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4. 유엔 회원국들이 무력공격 격퇴와 한반도

상기 두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기초해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의 유엔회원국이 참전을 결정했으며 군대의 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7월 7일 새로운 결의안을 통해 회원국의 참전을 환영하고 효과적 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창설할 것을 명하였다. 동 사령부는 미국이 사령관을 임명하고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이전 결의안에 따라 군사력과 다른 지원을 제공할 모든 국가들이 이의 명령을 따르도록 권고(recommend)했다. 또 통합사령부는 북한군과의 작전 시 유엔기나 참가국 국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았고 미국은 통합사령부의 행위에 대해 유엔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동 결의안은 역시 소련의 불참과 함께 이집트,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의 기권과 함께 7대 0으로 통과되었다.³⁾

이와 같이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강력한 주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 5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유럽과 달리 미국의 사활적 안보 이해가 관련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이 전쟁발발 직후 참전을 결정하고 유엔안보리를 주도했던 것은 대소 봉쇄전략과 제3차 세계대전 방지라는 전략적 차원의 고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⁴⁾

및 국제평화와 안전 회복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함.

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1588], July 7, 1950,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ODS). 7월 7일 안보리 결의안 제84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주도 하 통합군사령부가 군사력과 원조를 이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 2. 미국이 통합사령부 사령관을 지명할 것과, 3. 통합군사령부가 참가국의 국기와 동시에 재량에 따라 유엔기(United Nations Flag)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고, 4. 미국은 유엔사의 활동에 대해 안보리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함.

4)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290-291.

미국이 북한의 침공을 안보리에서 다룬다는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가 이미 국제분쟁, 특히 한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유엔을 활용할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⁵⁾ 1950년 1월 에치슨(Acheson) 미 국무장관의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일본-유구-필리핀으로 이어지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는 발표, ‘미국의 방위선 밖의 나라에 침범이 있으면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한다’는 발언 등이 그 주된 증거이다.⁶⁾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미국 주도 하 유엔군 사령부 설치를 가능케 하였고 역사상 최초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유엔의 깃발 아래 한반도에서 국제평화 회복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군은 유엔헌장이 애초에 예정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유엔헌장은 제7장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강제조치를 규정하면서 제47조에서 군사참모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이 위원회가 회원국 군대로 조직되는 유엔군을 지휘, 통솔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⁷⁾ 한국전쟁 후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유엔군 사령부는 이러한 군사참모위원회가 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예정되지 못한 방식으로 급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 파견이 결정된 것은 일정부분 역사적 우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엔 안보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절차 사항을 제외한 모

5) 오영달, “유엔의 한국전 개입이 유엔체제에 미친 영향”,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서울: 리북, 2004), p.99. 김동욱,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사』 (71), 2009, p.244에서 재인용.

6)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서울: 중앙일보사, 1996), p.77. 김동욱, 2009, p.244에서 재인용.

7) UN 헌장 제47조 3항.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겨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든 주요 사안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유엔헌장 제 27조 3항은 상임이사국 5개국의 동의를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투표로 표결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1950년 1월부터 소련은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의 대표권 문제에 대한 불만 표시로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고 있었다. 즉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아닌 중국 본토의 공산당 정부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한국 전쟁 발발 시 유엔 안보리는 소련 대표의 부재로 결의를 의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계속적 임무 수행을 위해 대표를 항상 상주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28조의 규정⁹⁾을 들어 소련의 불참을 기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안보리 결의를 이끌었다.¹⁰⁾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 대사의 불출석으로 역사적인 유엔군이 구성되어 한국전쟁에 투입될 수 있었지만 그 결과 북한, 소련, 중공 등 공산권의 50년 안보리 결의에 의한 유엔군의 법적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유엔으로부터 지휘권을 위임받은 트루먼 미 대통령은 미 합참을 대행기구로 지정, 미 합참이 한국전을 총괄 지휘하게 되었다. 미 합참은 미국의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그는 자신 휘하의 편제를 유엔군에 통합시켰다. 맥아더 장군은 7월 24일 동경에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한 후 극동군 사령부의 구성군인 제8군 사령부가 주한 미 지상군 작전지

8) UN 헌장 제27조 3항.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서 한다.

9) 유엔헌장 제28조 1항.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10) 미국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체(소련)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사용했으나 유엔 헌장의 명시적 규정에 따르면 논란의 소지를 가진다.

휘 임무를 맡고 대구로 사령부를 옮기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제 8군은 유엔 지상군과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했고 곧 극동 해군사령부와 공군사령부 역시 유엔 해공군 작전에 통합되었다.¹¹⁾

한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맥아더 장군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 교환공문의 형식으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로 이양했다. 맥아더는 7월 17일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재이양했고 이어서 한국 해공군도 유엔군과 함께 극동 해공군에 편입되었다.¹²⁾ 이렇게 수립된 유엔사는 한국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전쟁초기부터 유엔사는 동경에 유엔군 사령부를 두고 한국에 예하 야전부대로서 미8군이 주둔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에 따라 유엔군의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법적 논쟁이 제기되었다. 유엔군 및 유엔사를 수립시킨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낼 것을 명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조치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1950년 8월부터 안보리에 소련 대표가 복귀함에 따라 더 이상의 안보리 결의는 통과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는 안보리 결의 제376호를 통과시켜 유엔군의 38선 이북에서의 작전을 합법화했다.¹³⁾ 한편 동결의는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유엔사의 존립 근거가 사라졌다는

11) 이명철, 엄태암, 박원곤, 『안보상황 변화가 유엔사 역할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 국방연구원 국방정책 전문연구시리즈 2009-8. pp.32-33.

12) 이명철 등, 2009, p.33.

13) 동 총회 결의와 1950년 11월 3일의 UN 총회 결의 제377호 ‘평화를 위한 단결 (Uniting for Peace)’ 결의는 모두 UN 총회와 안보리 사이의 국제 평화 유지 의무 이행에 있어서의 권한관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 논쟁과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노동영, “한국문제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국방연구』 제60권 제4호(2017), p.55를 참조할 것.

주장에 대한 반론 근거로서도 작용한다. 즉 북한이 38선 이북 지역으로 격퇴된 상태에서 종전이 선언되었으므로 유엔사는 안보리 결의상의 목적을 모두 성취하였고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안보리 결의 제83호에서 ‘유엔 회원국은 침략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국에 제공토록 권고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북한이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유엔사의 지속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이 유력하다.

나. 한국전쟁 휴전 후의 역할 및 위상

1951년 7월부터 유엔군 사령관은 양측 간 정전협정을 주도해 나갔으며 1953년 7월 27일 자유진영을 대표하여 중국 및 북한의 군사사령관과 정전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정지를 보장하는 군사상의 휴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군사분계선(LMD)과 비무장지대(DMZ),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부칙 등 총 5개조 63개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별도로 부록과 임시적 보충협정이 동시에 체결되었다.¹⁴⁾ 정전협정 체결로 유엔사는 협정 이행 기체로서 휴전선 이남의 정전협정 이행 감독 책임을 갖게 되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산하에 군사정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조직이 정립되었다.

정전협정 체제 수립 후 유엔사는 1954년 11월 17일 ‘한국에

14) 서주석, “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 『통일시론』 청명문화재단, 2001.1, p.105.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을 한국과 체결함으로써 한국군의 작전통제권도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된다.¹⁵⁾ 동 의사록은 '유엔사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을 유지한다. 그러나 양측의 협의 후 양국의 상호적 또는 개별적 이익에 보다 부합된다고 합의할 경우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의사록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사에 여전히 존속하였지만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은 휴전협정으로 종료하였기 때문에, 작전지휘권은 한국으로 재귀속되었다. 즉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유엔사가 보유한 것은 한국에 대해 작전지휘권보다 축소된 '작전통제권'이 된 것이다.¹⁶⁾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지속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이행뿐 아니라 한국 방위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¹⁷⁾ 정전협정 제4조 60항은 한국전쟁을 평화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정전협정 발효 후 3개월 내에 개최하여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53년 10월부터 개최된 정치 예비회담은 참가국 범위, 특히 소련의 참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의 충돌로 결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4월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담도 해결책 마련에 실패한다.¹⁸⁾ 이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의 지속 속에서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유엔사는 한국 방위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밖에

15) 이명철 등, 2009, p.33.

16) 노동영, 2017, p.59.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란 국군에 대한 대통령과 그 명에 따라 군을 통치하는 권한인 작전지휘권의 하위 개념으로 부대의 구성 및 지휘관의 임명 등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작전 중 부대이동 등의 권한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이명철 등, 2009. p.34.

18) 서주석, 2001, p.110.

없었던 것이다.

한편 1957년 7월에는 극동지역에서 미군 지휘체계 변화에 따라 동경에 위치해 있던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다.¹⁹⁾ 한국전쟁 발발 후 미일 양국은 1951년 9월 ‘애치슨-요시다 교환공문’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서의 유엔 행동에 참가하는 군대에 대한 시설 및 역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²⁰⁾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4년 2월 19일 유엔사와 일본 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어 일본정부는 ‘유엔회원국의 군대가 극동지역에서 유엔에 의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승인·지원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에서 유엔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군대에 대한 중요시설 및 근무지원을 유엔군이 일본 영토에서 철수할 때까지 지원할 것’을 공식화하였다.²¹⁾

1957년 유엔군 사령부가 동경에서 서울로 이전하자,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일본 SOFA’의 유지를 위해 일본 자마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창설했다.²²⁾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엔군과 일본 정부와의 주둔군지위협정을 관리하고 일본 내 유엔군의 군수 및 지원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 내 유엔사 기지로는 요코스카, 사세보, 요코다, 자마, 후텐마, 화이트비치, 가데나 등 7개소가 있다.

또한 ‘유엔사-일본 SOFA’ 제24조에 따르면 ‘유엔군은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일본으로부터 철수’하며 제25조에 따르면 ‘본 협정과 합의된 개정 사항은 모든 유엔군이 제24조 조항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철수하는 그 날에 종료된다.

19) 서주석, 2001, p.108.

20) 윤덕민,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9-10, 2000, p.27.

21) 이명철 등, 2009, p.39.

22) 김동욱, 2009, p.246.

모든 유엔군이 그러한 날보다 일찍 일본으로부터 철수하는 경우에 본 협정과 합의된 개정 사항은 그러한 철수가 완료된 날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다. 1960-70년대 UN 중심의 논쟁 전개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상 예정되었던 정치회담이 결렬되어 휴전체제가 장기화되고 유엔사가 정전 책임을 오랫동안 맡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공산 측의 반론이 강력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엔을 무대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1970년대부터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엔사 해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²⁴⁾

유엔에서 유엔사 해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972년 7월 17일에 알제리 등 공산측 국가들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였다. 여기서 공산측 국가들은 '유엔사의 존재에 관한 재검토'를 주제로 한 토의를 요청했다. 이어서 공산측은 1973년 9월 21에도 '주한 외국군이 유엔 깃발을 사용할 권한을 박탈하고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제출했다.²⁵⁾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여 미국은 1973년 10월 3일 국무성 포터 차관의 명의로 한국에서 휴전 관리 기구를 보완하는 방안을 언급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유엔사 해체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12월 6일 키신저 국무장관이 '미국은 한국 정전협정 문제에 대해 폐쇄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정전협정을 대신할 대

23) 김동욱, 2009, p.247.

24) 이명철 등, 2009, p.9.

25) 서주석, 2001, p.108.

안을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²⁶⁾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0월 27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각서에서 '유엔사 해체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휴전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1975년 1월 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는 '정전협정 효력 존속을 전제로 한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 1975년 11월 18일 제30차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사 해체제 관한 서방측 및 공산측 결의안이 모두 통과되는 이변이 발생하게 된다.²⁸⁾ 당시 통과된 서방측 결의안은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희망'하고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가 마련되는 대로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도록 최단시일 내에 협의를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그 시한을 1976년 1월 1일로 잡았다. 이에 반해 공산측 결의안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유엔 기치하의 모든 주한 외국군이 철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후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당시 극심한 동서 대립 하에서 이 같은 협의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유엔사 문제는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1970년대 유엔을 둘러싼 논쟁에서 한미 등 서방측은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유지 문제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전협정 하에서도 적절한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유엔사가 폐지

26) 서주석, 2001, p.109.

27) 서주석, 2001, p.109.

28) 서주석, 2001, p.109. 이와 같이 1970년대 중반 당시는 유엔사 해체 문제가 중대한 관심사였고 한미 양국은 유엔사 해체 여부보다 유엔사 해체에 따르는 부작용을 어떻게 극소화할 것인가가 주된 고민거리였다. 사실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서방측과 공산측 결의안은 모두 유엔사 해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다만 서방측 안이 유엔사 해체에 앞서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관련국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였을 뿐이었다. 서주석, 2001, p.109.

될 수 있고 또 설령 정전협정이 폐지되더라도 유엔사는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당시 공산측의 요구도 유엔사 해체를 주한미군 철수의 한 방편으로 고려했던 것인 만큼 1978년 7월 한미연합군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CFC, 이하 연합사)의 창설로 유엔사의 권한 대부분이 연합사로 이관되면서 점차 시들해졌다.

1970년대 초까지 남북한 평화위원회 구성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북한이 1974년 3월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정전협정 폐지를 주장하면서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²⁹⁾ 북한은 한국이 소위 미국의 ‘괴뢰’이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닌 만큼³⁰⁾ 평화협정은 북미 사이에 체결되어야 하고 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이 떠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공산권 및 비동맹 국가들이 이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앞서 언급한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정전협정 폐기를 위한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서방측 및 공산측 결의안이 각각 통과되었던 것이다.

라. 1978년 연합사 체제로 전환

유엔사의 존폐에 관한 유엔에서의 논쟁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부 창설과 유엔사의 역할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로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유엔사의 역할은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체제의 주축에서 정전체제 관련 임무로 제한되기에 이른다.³¹⁾

29) 서주석, 2001, p.111.

30) 정전협정은 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평화협정에서 한국의 당사자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면,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 문제”, 『국제법학논총』 제52권 제2호(2007), pp.233-257.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국내 학계에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1) 이명철 등, 2009, p.9.

1978년 10월 17일 한국 외무부장관과 주한미국 대사간에는 ‘연합 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가 체결되었다. 본 교환각서는... ‘제11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 간에 합의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에 관한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서 상기 권한위임사항은 1953년 서명된 상호방위조약 및 1954년 서명되고 1955년과 1962년 각각 개정된 바 있는 합의의사록 중 한국 측 정책사항 제2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약정이며 또한 동 약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으로서 국제연합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을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이양된 1978년 이후부터는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전투부대의 작전통제의 경우, 유엔사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사에 전투부대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즉 침투, 습격 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유엔사는 한미 연합사에 대처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³³⁾ 이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온 유엔군사는 정전협정 당사자로만 남게 되고 그 밖의 기능과 권한은 한미연합사로 이양된 것이다.

국제법적 논란이 있던 유엔사 체제가 연합사 체제로 변경된 것은 한미동맹 입장에서는 제도화에 있어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³⁴⁾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의 일방적 지원과 한국의 완전한 의존으로 규정되었던 한미동맹은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의 정책 변화와 함께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을 낮게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해 인권문제 등의

32) 김동욱, 2009, p.251.

33) 이명철 등, 2009, p.37.

34) 윤영호, “안보파트너십과 한미 안보동맹의 제도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17권 제1호(2010), pp.67-105.

개선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주한미군 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는 자발적이기 보다는 강요된 것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던 유엔사가 사실상 미합참의 전적인 통제를 받는 기구인 것에 비해 한미 연합사는 한미 국가통수기구 및 군사기구의 협의로 작전통제권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일방적 의존성은 상당히 해소된 것일 뿐 아니라 제도화에 있어서도 진일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다만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실질적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유엔사의 권한과 의무, 임무와 능력 사이에 격차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되었다.

마. 1980년대 이후의 주요 이슈: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 및 전작권 전환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의 대표를 임명하여 군정위를 통해 정전협정의 이행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군정위 무력화 시도로 인해 동 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⁶⁾ 북한은 1954년 제네바회의 이래 유엔사가 자국의 국내문제를 간섭하는 도구라 주장해 왔다. 이러한 계속된 주장으로 북한은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의 해체 및 유엔기 아래에서 남한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군대의 철수를 지지하는 결의가 채택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³⁷⁾

35) 윤영호, 2010, p.82.

36) 이명철 등, 2009, p.28.

37) 김선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사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제2호(2005), p.97. 그러나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는 별도의 조약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다시금 강력하게 북미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정전체제 자체를 무력화하고자 했다.³⁸⁾ 북한은 1992년 3월에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맡으면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 불참하였고, 1994년 4월에는 일방적으로 군정위 북측 대표부를 철수, ‘조선인문군 판문점 대표부’로 대체시켰다. 같은 해 9월에는 중국 대표부를 자진 철수하게 하였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인 체코 대표단과 폴란드 대표단을 각각 1993년 4월과 1995년 2월에 축출하였다. 이어서 1995년 5월에는 중감위 북측 사무실을 폐쇄하고 중감위원의 공동경비구역 출입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³⁹⁾

북한은 또 1996년 2월 이른바 ‘북미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의 군사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했고,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다가 그 해 4월 초에 정전협정에 따른 DMZ 관리 책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직후 한미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민의 주도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다. 그 결과 1997년 12월에 4자 회담 본회의가 열려 1999년 8월까지 6차례 개최되었으나,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하는 한미와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전 없이 종료되었다.⁴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장희,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방안,”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제39권 1호(1994), p.68.

38) 서주석, 2001, p.111.

39) 정재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2014-10, p.4.

40) 서주석, 2001, p.111-112.

한편 북한은 1996년 4월 4일 자신의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 포기선언’으로 정전협정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동 선언은 정전협정의 ‘사실상 파기(de facto nullification)’에 해당할 뿐 ‘법률적 파기(de jure nullification)’로는 볼 수 없다.⁴¹⁾ 또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의 근간을 변경하여 유엔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근거가 희박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여전히 남북 간의 관계를 정전체제 하의 관계로써 전제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1980년대 이후 유엔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력신장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 한미 간 군사관계의 성숙에 따라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촉진되었다.⁴³⁾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군은 비무장지대의 일부분만 담당하고 한국군이 대부분의 비무장지대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1980년대 말부터 정전 시 작전통제권의 명확한 정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94년에 이에 대한 전략지시 2호가 하달되었다.⁴⁴⁾

1978년 전략지시 1호에 의거 연합사가 행사해오던 한국군에 대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공식 전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연합사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mbined Delegated

41) 김선표, 2005, p.88.

42) 김선표, 2005, p.89.

43) 김동욱, 2009, p.252.

44) 김동욱, 2009, p.252.

Authority: CODA)’을 통해 ‘전시 연합작전계획의 수립 및 발전’, ‘한미 연합 군사정보의 관리’, ‘위기관리 및 정전협정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위해 정전 시에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정된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⁵⁾

전시의 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 동맹의 환경이 변화되면서부터다. 동서 냉전체제의 와해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위협의 스펙트럼과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싸우는 방법의 변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해외 주둔 군사력 재배치(Global Posture Review: GPR)’,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확보 등을 추진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맹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역할 확대를 촉구하였다.⁴⁶⁾

한편 한국에서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15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2006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2007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⁴⁷⁾ 이와 같은 계획은 2015년으로 1차 연기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45) 김동욱, 2009, p.252. CODA의 구체적 내용은 1) 지정된 부대에 대하여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2) 작전계획수립, 3) 합동고리 발전, 4) 연합 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연합 정보관리, 6) C4I 상호운용성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46) 김동욱, 2009, p.253.

47) 김동욱, 2009, p.253.

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전환 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해체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동맹 구조에서 미국 한국사령부(US Korean Command: US KORCOM)가 창설되고, 이후로는 ‘한국군(주도: supported)-미군(지원: supporting)’ 사이의 새로운 군사협력관계가 탄생하게 된다. 또한 동맹국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동맹군사협조본부(AMCC: Alliance Military Coordination Center)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략적 수준의 협조는 물론 동맹관리를 위한 비작전적 요소까지 담당하게 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전시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에 이양되어 있던 모든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전통제권의 향방과 관련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⁴⁸⁾ 먼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이양했던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양되었던 작전통제권은 연합사의 소멸과 함께 다시 유엔사령부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있다.⁴⁹⁾ 이에 반해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은 연합사 창설 시 정전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모두 연합사로 이양된 것이기 때문에 연합사 소멸 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에게 최종적으로 이양된다는 주장도 있다.⁵⁰⁾

향후 전작권 전환 이전에 평화협정 체결되어 유엔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될 경우 이상과 같은 논의는 제기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이루어지거나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유엔사가 존속할 경우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한미 간에 협의에 의해 해

48) 노동영, 2017. pp.60-61.

49)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p.126.

50) 정경영, 『유엔사의 미래역할과 한국군과의 관계정립 방안』 21세기군사연구소(2007), p.71.

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법리에 의해 해결하거나 논쟁을 벌일 문제는 아닌 것이라 생각된다. 상술한바 54년 합의의사록에도 양국의 상호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합의할 경우 바꿀 수 있다고 규정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평화체제 이행의 주요 쟁점 및 역사적 분석의 함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위기의 극단에서 역설적으로 평화라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 또한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이라는 변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그 결과 기존의 한반도 전쟁 억제 체제에도 큰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비핵화가 성공하고 남북 간 단계적 군축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정착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국방 및 군사전략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반도의 정전상태는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될 것이며 유엔사의 존재 문제가 첨예한 안건으로 제시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이 현저히 감소해 감에 따라 ‘책임국방’ 실현의 일환으로 가까운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 경우 연합사의 해체와 더불어 또 다시 유엔사의 존재, 위상 및 역할에 대한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전장의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엔사는 유엔 헌장에 예정된 기관이 아니었으며 그에 따라 냉전기 전체에 걸쳐 동서 진영 간 극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향후 평화체제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하에서는 먼저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이행 과정에서 유엔사와 관련되어 제기될 주요 문제를 식별해 보고 이어서 전장의 역사적 분석에 근거하여 평화협정 체결 및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유엔사 관련 문제의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가. 북한 비핵화, 평화체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2017년 북핵 위협이 최고조로 고조되면서 극적인 전환의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의 평화촉진 외교의 결과 2018년 3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측 특사의 방북 결과 보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 회담을 전격 수락했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비핵화 과정의 지난함을 고려할 때 북미 양국 최고 지도자 간의 정치적 타결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의 거의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과정은 실무 수준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정치적 난제들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개발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 주장하며 핵포기의 대가로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요구의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알 수 없으나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7일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였던 판문점 선언은 2018년 중 종전선언을 이루고 나아가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⁵¹⁾

따라서 향후 비핵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정전상태는 법적으로 완전히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먼저 그 동안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의 결과로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유엔사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사는 유엔 헌장 상에 예정된 기관이 아니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 동서양 진영 간의 논쟁이 대상이 되어 왔다. 더불어 1978년 연합사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중심 기구의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에도 전쟁이 재발할 경우 유엔의 권위 아래 16개 참전국들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제로 남아 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및 유엔사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유엔사의 본질에 대한 논쟁과 깊이 연관된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유엔사의 법적 본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⁵²⁾ 먼저 당시의 유엔군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보는 견해이다. 한국에 파병된 유엔군은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유엔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미국의 통제에 있었으므로 유엔 헌장 제51조 상의 집단적 자위권에 의거 한국의 요청 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들의 승낙으로 행사된 집단적 자위권의 결과였다는 것이다.⁵³⁾ 이러한 견

51) 연합뉴스, “북 강력 제기로 종전선언 핫이슈 부상... 남북미중 복잡한 셈법,” 2018. 7. 8.

52) 노동영, 2017, pp.56-57.

53) 이러한 견해는 다시 유엔군을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을 한국군을 지원하는 통합군대의 형태로 행사한 것이라는 견해(신용호), 헌장 51조 상의 집단적 자위권에 기초하여 헌장 제2조 6항에 따라 비회원국인 한국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장 적용한 것이라는 견해(이상면, Akehurst), 헌장 제40조의 군사적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권고된 회원국의 자발적 지원군이라는 견해(김정균) 등으로 나뉜다. 신용호, “주한유엔군의 법적 성격”,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24권 1호(1999), p.316; 이상면,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2007), p.242. Michael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antional*

해는 특히 유엔 헌장 상에 예정되어 있던 제43조 상의 ‘병력 제공을 위한 특별협정’, 제47조 상의 ‘군사참모위원회’의 부재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엔군은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유엔 헌장 상의 군사적 강제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유엔에 의한 군사적 개입이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유엔군이라고 보는 견해,⁵⁴⁾ 엄연히 안보리 결의에 의한 헌장 7장 상의 조치였다는 견해,⁵⁵⁾ 헌장 제7조 2항에 따른 유엔의 보조기관이자 제29조에 따른 안보리 보조기관으로서 안보리 결의 제83호에 따라 회원국들이 제공한 군대로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따른 미국 통제 하에 통합사령부를 구성, 강제조치인 군사행동을 수행한 것이라는 견해⁵⁶⁾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문제는 국제법 법리 상 매우 난해하며 법리 논쟁만으로는 선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파생된 원인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역사적 특수상황 속에서 유엔 헌장에 예정되지 않은 방식의 기구가 설립되었으며 관련 국제법 역시 어느 한 입장이 우세하다고 할 만큼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북한, 중국은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평화체제 이행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결국 법리 및 정치적 논쟁과 더불어 관련 국가 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해결될 가능성이

Law, (London: Allen and Unwin, 1987), pp.223-224; 김정균, “남북한 간의 협정형태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0권 제1호(1985), p.110. 이상은 노동영, 2017에서 재인용함.

54)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1997), p.699. 노동영, 2017에서 재인용함.

55)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2010), p.36; Georg 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1967), p.297. 노동영, 2017에서 재인용함.

56)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 공저 『국제법II』, 법문사(2000), p.717. 노동영, 2017에서 재인용함.

크다.⁵⁷⁾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책임국방’을 내세우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핵 위협이 현저히 줄어들 경우 전작권 환수 추진은 더욱 탈력을 받을 전망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작권이 환수되며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유엔사의 권위와 위상,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먼저 정치적 행위인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핵화가 달성한 후에도 체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유엔사는 존속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더불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유엔사를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유엔사는 해체되지 않고 존속되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의 존폐 문제

상술한바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유엔사 존폐의 문제는 단순히 국제법 상 법리 문제일 뿐 아니라 향후 정치적 협상 결과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관련국들의 입장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유엔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유엔사 체제의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57) 중요한 점은 당시의 상황 상 어느 한편이 우월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유엔사는 1978년 연합사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이후 현재까지 첫째, 정전협정의 유지 및 관리, 둘째, 전시에 회원국의 전력(국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의 유지를 통해 미국 및 유엔 회원국의 군대가 일본에 진입하고 기지를 이용하는 편의의 제공을 통해 전시 증원군의 신속한 증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군대를 파견했던 16개 국가들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전쟁 재발 시 군사력을 파견할 것임을 결의한 바 있다. 상술한 바 유엔사는 1954년 2월 일본과의 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통해 유엔사의 교전행위를 위해 유엔 회원국 군대가 일본 진입 시 이를 허가하고 시설사용의 편의를 제공할 권한을 확보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1990년대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과 군사도발을 거치면서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된 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유엔사의 북한 억제 및 오판 방지, 평화유지 기능을 높이 평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논의 중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유엔사가 여전히 존치될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북한 위협의 존재를 가정한 것이며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연합사와 달리 유엔사는 미 합참의 직접적 지휘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사시 한국의 입장 및 의지와 무관한 독자적 작전수행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⁵⁹⁾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58) 정재욱, 2014, p.3.

59) 정재욱, 2014, p.6. 유엔사를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인정할 경우 유엔사의 해체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이 결의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미국은 유엔사의 해체를 언제나 차단할 수 있다.

정전 시 교전규칙이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한국군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⁶⁰⁾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유엔사의 기능과 위상을 보강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미국은 2010년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직접 기술, 강조한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미군 감축의 불가피성 하 아태지역에서 동맹의 역할 확대 및 분쟁에 대한 직접 개입 자제를 표방해 왔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주도’보다는 ‘지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기조를 수립해 왔다.

미국은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유엔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⁶¹⁾ 미국은 유엔사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작전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직접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이자 나아가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위치한 7개 유엔사 후방기지는 향후 미국 군사전략의 중심이 될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군사적 상황 발생 시 다국적 군대를 신속하게 집결하고 운용하는데 매우 유리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사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사 해체문제를 포함, 유엔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배타적 결정

60) 김종대, “유엔사 강화 노리는 한미, ‘6.25 전쟁으로 회귀’바라나,” 민족 21, 2012. 9. pp.78-83

61) 정재욱, 2014, pp.4-5. 미국은 2009년 ‘다국간협조본부(The Multi National Coordination Center, MNCC)’를 설립해 16개 참전국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원활히 해 오기도 했다. William R. McKinney, “Ending US-ROK Military Exercises: An Idea Whose Time Has Come,” 38 North, 2018. 6. 13.

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S/1588)에 의해 설치된 UN의 보조기관으로서, 유엔사의 해체 문제는 정전협정의 폐기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⁶²⁾

이상과 같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양 후 공백을 운운하면서 유엔사를 유지, 확대, 강화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⁶³⁾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표권 문제에 기반하여 유엔사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 유엔사의 존치를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50년 안보리 결의에 의한 유엔사의 국제적 권위 및 군사력 동원은 북한에 의한 재침공의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⁶⁴⁾ 다만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양국 간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역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될 경우 북한이 남침할 경우 작동되는 유엔사 체제를 반드시 지속시킬 이유는 없을 것이다.

62) 정재욱, 2014, p.5.

63) 노동신문, 2007. 7. 27. 정재욱, 2014, p.4에서 재인용.

64) 만일 평화체제로 전환된 이후 북한에 대한 재침공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제법 및 유엔헌장 상 무력사용 금지에 대한 위반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유엔사의 소멸로 인해 일정한 억제력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한미연합방위력의 억제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유엔사로 인한 미 증원군 투입 기능 등을 고려 군사적 억제력 확보와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해 유엔사가 평화협정이나 전작권 전환 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In Bum Chun, "The Future of the UN Command," 38 North, 2017. 9. 12.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고려할 경우 유엔사의 존치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로 직결된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미일 양국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⁶⁵⁾ 다만 평화협정 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일 간의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가 평화협정 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협정 체결이 임박할 경우 미일 간에 후방기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의 존폐 및 위상과 역할 문제

상술한바 평화협정 체결이 지연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평화협정 체결 후 유엔사가 존치하는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78년 유엔사에서 연합사로 넘겨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이양된 것이 아닌 위임된 것이며 연합사가 폐지되면 그 위임의 해제로 유엔사로 다시 귀속된다는 견해가 있다.⁶⁶⁾ 한국전쟁 초기 안보리 결의로 결성된 유엔군의 주된 임무는 정전협정 후 군사정전위원회 활동과 부가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해 회원국의 재참전과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었

65) 미국 역시 현 유엔사 체제는 북한의 도발에 경우에만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북한 위협의 현저한 감소 시 그 효용성은 저하될 것이다. 유엔사의 틀을 유지한 채 목적과 기능, 위상을 바꾸는 방안이 가능하다. 예컨대 유엔사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일종의 '평화유지군'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최종적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정전체제 관리 체계를 대체하는 평화체제 보장 조직으로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반대할 것이 예상된다.

66) 노동영, 2017, pp.60-61.

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권한만을 갖게 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여전히 한국의 방위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역시 1954년 한미 간에 이루어진 합의의사록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미 간 정치적 협의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미가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과 한국의 방위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한미가 동맹의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면 그 취지에 입각해 볼 때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권을 모두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미동맹의 문제이자 한국의 주권문제인 작전통제권 문제를 복잡한 법리 문제로 치환하려는 시도는 논쟁의 본질을 흐리고 불필요한 국론분열 및 동맹 간의 불협화음을 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비핵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는 미군 대장인 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직책도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실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엔군사령관이 정전관리와 전시 전력제공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정전관리 수단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전관리에 대한 한미 간의 별도의 조율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⁶⁷⁾

67) 김동욱, 2009, p.242. 즉 유엔사가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에 대해 정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을 요구할 권한을 갖도록 한미 간에 새로운 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및 제언

한반도는 군사적 위기와 평화 사이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한반도의 준비를 게을리 할 수 없으나 새롭게 맞이한 평화의 기회 역시 소중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진전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체제 관리와 전쟁 재발 억제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 존치 및 폐지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유엔사가 수립되고 전개되어 온 과거의 역사를 고려 시 이 문제는 국내외에 많은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국익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사의 수립 이후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쟁점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과 기존 연구들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평화체제 이행 시 발생할 유엔사 관련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각 쟁점별 주요 국가의 인식과 전략을 분석, 제시하였다. 상술한바 유엔사는 냉전이 형성되던 시기 유엔 헌장 상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구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립되어 냉전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법적 법리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 결과 첫째, 이와 같은 문제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잘못된 주장이 성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학

계의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주요 관련국들의 전략적 입장도 예단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기존 입장들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군사위협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⁶⁸⁾

유엔사의 존폐와 관련된 국제법상 쟁점들은 유엔사의 성립 및 전개과정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리상의 논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⁶⁹⁾ 그 보다 평화체제 이행 과정에서 관련국들의 치열한 전략적 계산과 협상의 결과로 해결될 것이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국익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문제의 해결방식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국익의 손상 뿐 아니라 관련국들의 이해의 불일치로 어렵게 형성된 평화의 기회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군사사 학계가 많은 연구 업적을 지속적으로 산출해 주기를 희망해 본다.

(원고투고일 : 2018. 7. 9, 심사수정일 : 2018. 8. 15, 게재확정일 : 2018. 8. 16)

주제어 : 유엔사, 비핵화, 평화체제, 평화협정, 전작권 전환, 연합사, 한미동맹, 주한미군

68)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유엔사에 대해 어떠한 접근법을 취할지 미리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다만 국방부를 비롯한 미 의회, 전문가 집단 등은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 정부 및 해당 부처 간에 긴밀한 사전 협의와 조율을 통해 평화체제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9) 본문을 통해 주장한바 역사적 배경 및 관련 국제법적 논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될 경우 잘못 알려진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들로 인해 여론이 호도되고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참 고 문 헌>

- 김동욱,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사』 (71), 2009.
- 김선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사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제2호(2005)
- 김정균, “남북한 간의 협정형태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0권 제1호(1985)
- 남정욱,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노동영, “한국문제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국방연구』 제60권 제4호(2017)
- 서주석, “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 『통일시론』 청명문화재단, 2001. 1.
- 신용호, “주한유엔군의 법적 성격,”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24권 1호(1999)
-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 연합뉴스, “북 강력 제기로 종전선언 핫이슈 부상.. 남북미중 복잡한 셈법,” 2018. 7. 8.
- 오영달, “유엔의 한국전 개입이 유엔체제에 미친 영향,”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 전쟁』 (서울: 리북, 2004)
-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 공저 『국제법II』, 법문사(2000)
- 윤덕민,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9-10, 2000.
- 윤영호, “안보파트너십과 한미 안보동맹의 제도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17권 제1호(2010)
- 이명철, 엄태암, 박원곤, 『안보상황 변화가 유엔사 역할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 전문연구시리즈 2009-8.
- 이상면,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 문제,” 『국제법학논총』 제52권 제2호(2007)
- 이장희,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방안,”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39권 1호(1994)
-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1997)
- 정경영, 『유엔사의 미래역할과 한국군과의 관계정립 방안』 21세기군사연구소(2007)
- 정재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2014-10.
-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2010)
-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서울: 중앙일보사, 1996)

Akehurst, Michael,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antional Law
(London: Allen and Unwin, 1987).

Schwarzenberger, Georg,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1967).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1501], June 25, 1950,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OD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1511], June 27, 1950,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OD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1588], July 7, 1950,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ODS).

William R. McKinney, "Ending US-ROK Military Exercises: An Idea
Whose Time Has Come," 38 North, 2018. 6. 13.

<Abstract>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n Peninsula : The Past and The Present

Seol, In-hyo

The Korean Peninsula is now standing at the crossroad between military crisis and peace. It is the proper time to review all the possible questions which will occur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transferring to Korean Peace Regime, and produce proper policy option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The transfer to the Peace Regime which will take place simultaneously with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 expected to raise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r abolition of United Nations Command. Considering the historical contexts where UNC was created and developed, the questions are highly likely to cause a lot of debates which could be led to unnecessary national division and conflicts among related countries. The article tries to provide concise explanations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UNC and major issues related with it. Together the article analyzes the recognitions and strategies of main players and policy options to deal with them.

Key words : UNC, Denuclearization, Peace Regime, Peace Treaty,
OPCON Transfer, Combined Forces Command

